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79호
----------	------

2021. 06. 08.

건명	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1. 06. 08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6. 08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「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및 「논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」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사항(수수료의 부과징수)을 「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임.

### 주요내용

- 음식물류폐기물 봉투 및 처리수수료(납부칩)가격 조항 및 별표 삭제  
- 삭제된 사항은 「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」 별표4에 추가

###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.

# 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80호
----------	------

2021. 06. 08.

건명	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21. 06. 08.
소관위원회	산업건설위원회	회부연월일	2021. 06. 08.

## 보 고 내 용

### 제안이유

- 환경미화원의 근·골격계 부상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100리터 쓰레기규격봉투의 제작·판매중지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리터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 제작·판매규정을 신설하는 조례임.

### 주요내용

- 100리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·판매 중지 및 20리터 음식물쓰레기봉투 제작·판매(안 제8조 제10항)
-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칩 판매가격 및 규격추가(안 제12조 제3항)
- 시장은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.  
(안 제9조의2)

###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